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0일, 이철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
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11.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고안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건의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함)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특허법 개정안 제229조의3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49조의3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특허법」 제41조제1항¹⁾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 제11조²⁾에서는 정부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비밀특허제도³⁾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경우에 특정인에 의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일정 한도에서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특허법」 제41조제5항 및 제6항⁴⁾), 처벌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 국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1)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2)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참고자료 1. 국방상 비밀특허 관련 운영 개요 및 현황

4)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에의 특허출원 비밀취급 명령 등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나⁵⁾, 최근 국방 특허출원이 레이더 표적탐지, 무선 통신, 영상처리 등 ICT 결합을 통한 융복합화·스마트화되고 있어 민간 방산 업체의 다양한 국방 관련 기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⁶⁾.

한편,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는 국방 관련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⁷⁾⁸⁾.

[표 2] 주요국의 비밀특허 대상 및 벌칙 규정 운영 현황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비밀대상	국가안보	국가·국민의 안전	국가안전, 중대이익
위반시 벌칙	·(징역) 2년 이하 ·(벌금) 1만\$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금) 100만엔 이하	·(징역) 3년~7년

이에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방 관련 출원 중 비밀취급 건수는 14건임.

6) 민간 방산업체의 ICT 분류기술 증가 추세: 주요 방산업체(LIG넥스원, 한화시스템, 국과연 등 7개)의 최근 5년간('19~'23) 특허출원을 특허분류별로 살펴보면, 표적탐지, 무선통신, 영상처리 등 ICT 융합기술 분류의 출원이 상위 10개 중 6개임(자료: 특허청).

7)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가들은 “국방관련특허출원 비밀보호협정”을 체결(1960.9.21.)하였으며, 참여한 국가들은 국방관련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비밀취급과 그러한 자료의 승인없는 공개금지 및 위반시 처벌에 관한 법령과 행정절차를 구비하고 있음.

8) 참고자료 2. 해외 입법례: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제재 관련

다만, 개정안은 특허출원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 실제 위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도 함께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9)에 제229조의3(「실용신안법」의 경우 제50조10)에 제49조의3)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11).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9) 「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실용신안법」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법제이론과 실무」, 국회 법제실).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